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-302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

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재정계획, 재정공시, 투자사업 등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재정 관련 개별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개별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른 조례명 변경
- 나.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재정 관련 개별 위원회 통합 운영규정 마련(안 제1조)
- 다. 재정계획 등 통합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(안 제2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

구청장 (참조 : 기획예산과장, ☎ 450-7260 FAX: 411-1721, E-mail : ffwajy80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